

# 「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년 5월 13일, 이창열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4년 5월 17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4년 5월 17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이창열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우리 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(안 제4조)
-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(안 제5조)
- 지원사업 운영 위탁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욱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.....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
2.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.

[붙임 1]

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
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24. 5. 17.)

「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전문위원 김 영 옥)

# 「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창열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5. 13.
- 회부일자 : 2024. 5. 17.
- 상정일자 : 2024. 5. 17.

### 2. 제안이유

- 우리 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(안 제4조)
-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(안 제5조)
- 지원사업 운영 위탁(안 제6조)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-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‘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’ 고 규정하고 있음.

### 나. 입법의 취지

-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4조(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)에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5년마다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.
- 안 제5조(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)에서는 관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추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가능할 수 있게 함.

### <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>

1.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·개발 및 보급
2.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컨설팅
3.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
4.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조성·설치·운영·시설 지원
5.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
6. 스마트팜 지원
7.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관내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입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.

[붙임 2]

##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이 창 열 의원

#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27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년 5월 13일

발의자: 이창열 의원

찬성자: 심현정, 김광성, 남진삼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함.

## 2. 주요내용

- 목적(안 제1조)
-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(안 제4조)
-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(안 제5조)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예산조치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첨부)

다. 입법예고: 2024. 3. 26. ~ 2024. 4. 15.(20일간), 아래표 참조.

라. 집행기관의견수렴: 2024. 3. 12. ~ 2024. 3. 25.(14일간), 의견 없음.

조례안(의회안)	수정안	사유	의회 의견
없음	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관행의 촉진을 위하여	농업의 사회적 기능 유지·강화 반영	<p>[일부수용]</p> <p>○ 안 제1조(목적)의 조문 일부 수정</p> <p>(기존안)</p> <p>○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<u>지역경제</u>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(수정안)</p> <p>○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<u>지속가능한 농업</u>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스마트농업	스마트 농림업	산림도시 평창군의 임업농가의 수요 반영	<p>[원안유지]</p> <p>○ 상위법인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<u>스마트농업</u>의 정의 존재.</p> <p>○ 안 제2조제1호 농업의 정의에 “임업” 포함. ※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</p>

제2조(농업의 범위)

○ 안 제2조제4호 스마트팜 정의 중 작물재배 시설에 특용작물(버섯,인삼 등) 포함가능.

##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.
2. “농업인”이란 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.
3. “스마트농업”이란 농업의 생산성·품질 향상과 경영비·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.
4. “스마트팜(Smart Farm)”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·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.

**제3조(군수의 책무)**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·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)**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5년마다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(이하 “육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하며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기본 방향
  2.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
  3.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·보급·확산 및 활용 촉진
  4.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
  5. 스마트농업의 생산, 유통, 경영 등 추진전략
  6.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
  7.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·보완할 수 있다.
-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5조(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)**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·개발 및 보급
  2.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컨설팅
  3.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
  4.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조성·설치·운영·시설 지원
  5.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
  6. 스마트팜 지원 사업
  7.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

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창업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, 신청요건,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**제6조(운영의 위탁)**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제1항 사업을 법인·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[관계법령]

#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·정밀화·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·농촌의 성장·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마트농업”이란 농업(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생산성·품질 향상과 경영비·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.
2. “스마트농업데이터”란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·문자·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## 비용추계서 (제3조제1항 관련)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: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인건비, 일반운영비 등

나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4조(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)
- 조례안 제5조(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)

### 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온실 스마트팜, 광제어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, 일반운영비, 연구개발비, 시설 및 부대비, 자산취득비 등 소요예산 항목별 적용

나. 추계 결과: 연간 세출예산 추계 아래 표 참조

연도	내역	산출기초	예산액 (천원)	비고
합계			746,408	국비 75,000 군비 644,908 도비 26,500
2024년	인건비	기간제근로자등 보수(101-04) : 일시사역 250명	19,720	군비 19,720
	일반운영비	사무관리비(201-01) : 일반수용비, 스마트팜 대학운영 등	46,000	군비 46,000
		공공운영비(201-02) : 공공요금 및 제세, 시설장비유지비	8,000	군비 8,000
	연구개발비	시험연구비(207-03) : 스마트팜 영농교육장 운영 실험연구비	10,000	군비 10,000
시설비및부대비	시설비(401-01) : 스마트팜 교육장 시설 개선	10,000	군비 10,000	
2025년	인건비	기간제근로자등 보수(101-04) : 기간제 2명	56,422	군비 56,422

	일반운영비	사무관리비(201-01) : 일반수용비, 스마트팜 대학운영 등	46,000	군비 46,000
		공공운영비(201-02) : 공공요금 및 제세, 시설장비유지비	10,000	군비 10,000
	연구개발비	시험연구비(207-03) : 스마트팜 영농교육장 운영 실험연구비	30,000	국비 15,000 군비 15,000
	시설비및부대비	시설비(401-01) : 스마트팜 교육장 시설 개선	30,000	국비 15,000 군비 15,000
	자산취득비	자산및물품취득비(405-01) : 스마트팜 운영 및 데이터 구축 장비 구입	53,000	도비 26,500 군비 26,500
2026~ 2028년	인건비	기간제근로자등 보수(101-04) : 기간제 2명 * 3년	169,266	군비 169,266
	일반운영비	사무관리비(201-01) : 일반수용비, 스마트팜 대학운영 등 * 3년	138,000	군비 138,000
		공공운영비(201-02) : 공공요금 및 제세, 시설장비유지비 * 3년	30,000	군비 30,000
	연구개발비	시험연구비(207-03) : 스마트팜 운영 실험연구비 * 3년	60,000	국비 30,000 군비 30,000
	시설비및부대비	시설비(401-01) : 스마트팜 교육장 시설 개선* 3년	30,000	국비 15,000 군비 15,000

#### 다. 재원조달 방안

- 자체 재원(2024년 당초예산 편성)
- 도비(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)
- 국비(스마트 영농지원체계 구축 사업, 과학 영농현장 기술 지원)

### 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용하
연락처	(033) 330 - 1304

**< 연도별 비용추계표 >**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<b>세 입</b>							
<b>세 출</b>		<b>93,720</b>	<b>225,422</b>	<b>142,422</b>	<b>142,422</b>	<b>142,422</b>	<b>746,408</b>
	인건비	19,720	56,422	56,422	56,422	56,422	<b>245,408</b>
	일반운영비	54,000	56,000	56,000	56,000	56,000	<b>278,000</b>
	연구개발비	10,000	30,000	20,000	20,000	20,000	<b>100,000</b>
	시설비및부대비	10,000	30,000	10,000	10,000	10,000	<b>70,000</b>
	자산취득비		53,000				<b>53,000</b>
<b>재원 조달</b>		<b>93,720</b>	<b>225,422</b>	<b>142,422</b>	<b>142,422</b>	<b>142,422</b>	<b>746,408</b>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56,500	15,000	15,000	15,000	<b>101,500</b>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	군비	93,720	168,922	127,422	127,422	127,422	<b>644,908</b>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민간자본							
해외자본		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